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0-1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359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A
	2. B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6. 1. 19. 선고 2015구합63556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6. 28.
판 결 선 고	2016. 8. 23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6. 25. 원고들에 대하여 한 【별지 1】 과세처분 내역 '증액경정'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'당초 신고·납부 등'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(가산세 포함)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0-18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가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"있었던 점"을 "있었고, 인접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와 동일한 수종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"으로 고침

나.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"②" 다음

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선은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가 이 사건 주택 방향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에 1㎡가 부족하도록 꺾여져 분할되었고,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상열

판사 정봉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0-18

판사 조용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0-18

【별지 1】

과세처분 내역

(단위 : 원)

과세대상		당초 신고·납부 등			증액경정		
		일자	세액		일자	세액	
			취득세	농어촌 특별세		취득세	농어촌 특별세
토지	원고 A	2010. 12. 3.	8,000,000	800,000	2014. 6. 25.	54,867,200	5,486,720
	원고 B		8,000,000	800,000		54,867,200	5,486,720
주택	원고 A	2012. 2. 14.	3,417,570	244,110		17,642,470	1,666,570
	원고 B		3,417,570	244,110		17,642,470	1,666,570
지목 변경	원고 A	2012. 10. 9.	411,205	41,110		2,298,565	229,830
	원고 B		411,205	41,110		2,298,565	229,830